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 재계약 추진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제2항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재계약 필요성

- 기존 계약 기간 동안(2021. 7. 1. ~ 2024. 6. 30.) 휴양림 홍보 및 휴양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직영 대비 운영수지 개선

※ 영업실적 : 2019년(직영), 916백만원 ⇒ 2023년(위탁), 1,298백만원(41.7% 증가)

- 건축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 등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운영 경험 보유로 체계적 사업수행 가능
-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 위탁사무 내용 : 도립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전반

- 휴양림 이용료의 징수(산림휴양법 제21조의5)
- 휴양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산림휴양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 시설물의 유지·관리(건축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 등)
- 휴양림의 운영관리(예약, 매표, 환경정비, 이용객관리, 홍보마케팅 등)

-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휴양림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위 치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6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323
운영인력	19명(일반직3, 업무직7, 기간제9)	13명(일반직2, 업무직4, 기간제7)
숙박인원	258명(16동 29실)	216명(14동 31실)
시설규모	25개동 연면적 6,920㎡	19개동 연면적 2,947㎡
숙박시설	전통가옥, 숲속의집, 호반하우스 등	휴양관, 숲속의집, 카라반 등
교육시설	산림교육관(대회의실), 세미나실	교육관(강당)
체험시설	치유관, 체험학습관	광산동굴
부대시설	다목적구장, 족구장, 공원, 산책로 등	야영장, 다목적구장, 공원, 산책로 등

○ 수탁기관 개요

- 수탁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주시 보문로466)
- 인력규모 : 397명(일반직 179명/ 비정규직 218명)
- 재계약기간 : 2024. 7. 1. ~ 2026. 12. 31.(2년 6개월)

※ 효율적인 예산 관리·운영을 위한 계약기간 연단위 조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재계약 후 최초연도인 2024년 하반기 사업비 구성은 기존예산 편성에 따름

※ 2024년 하반기 사업비 구성 : 450백만원(위탁금) + 650백만원(수입금)

- 연차별 예산 편성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537	2,608	- 위탁수수료 포함 - 임금물가상승률 반영
안동호반	1,610	1,655	
팔공산금화	927	953	

* 위탁운영 재계약 원가계산 용역 결과 반영(2025년, 2026년 소요예산 분석)

- 인건비 : 32명(일반직 5, 업무직 11, 기간제 16)
- 일반경비 : 소모품, 전력비, 수도요금, 홍보비, 기타수수료 등
- 대행수수료 : 공공기관 위탁(대행)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4% 이내 적용
- 사업비 : (기존) 수입금 + 위탁금 → (변경) 전액 위탁금 편성
- 수입금 전액 도 세입 처리

○ 공공기관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4. 3. 12.(화) ~ 3. 14.(목)
- 심의내용 : 독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재계약(갱신) 사전 적정성
- 심의위원 : 9명
- 심의결과 : 적정[붙임1]

※ 위탁·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 적정【예산담당관- 3489(2024. 3. 15.)】

○ 공공기관위탁 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023. 7. 3.(월)
- 평가방법 : 현장평가(증빙 자료 확인 등)

- 평가결과 : 80점(우수)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동의안의 주요 내용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이하 “동의안”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기 존	변경(동의안)
계약기간	2021.7.~2024.6.(3년간)	2024.7~2026.12.(2년 6개월간)
수탁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위탁방법	①운영비=위탁금+운영수입 ②운영비에 총당 후, 남은 초과 운영수입을 수탁기관(50%), 도 세외수입(50%)로 배분 ※수탁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①운영비 전액을 위탁금으로 지급 ②수입금 전액을 도 세외수입 조치 ③운영기관에 대행수수료 지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탁금의 4%

나. 재계약의 필요성

- 동의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안동호반 및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의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¹⁾ 및 제9조²⁾에

1)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 동의)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2)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9조(계약체결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7개소(국립 46, 공립 127, 사립 24)이며 이 중 46개소(국립 2, 공립 44)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자연휴양림의 특성상 주로 공사·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국립자연휴양림 중 2개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립자연휴양림 44개소는 공사·공단 31, 산림조합 8, 민간법인 5에 위탁하고 있음

-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함)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도립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함) 2개소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은 도가 직영하던 2019년에 비해 수입금은 41.7%(9억 1,600만원→12억 9,800백만원), 이용인원은 30.7%(66,963명→87,571명) 증가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남.

다. 재계약 내용 검토

□ 재계약 기간 및 예산

-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이는 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조정하여 예산의 관리·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수탁기관이 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이하 “운영비” 라 함)를 도가 위탁금으로 지급하는데 소요하는 예산(이하 “위탁금” 이라 함)은 55억 9,500만원(2024년 하반기 4억 5,000만원, 2025년 25억 3,700만원, 2026년 26억 800백만원)으로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 결과 >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비고
합 계	2,537,060	2,608,592	
인건비 (a)	1,243,320	1,283,976	임금상승률 3.27% 적용
일반경비 (b)	974,390	996,261	물가상승률 3.81% 적용
대행수수료 (c)	88,708	91,210	(a+b)×4%
부가세	230,642	237,145	(a+b+c)×10%

□ 재계약 예산 증가 사유

○ 재계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2025년부터 급증하는 이유는,
기존 계약방식은 ①위탁금과 ②운영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 후,
남은 초과수입을 도 세외수입(50%)과 수탁기관(50%)로 배분

하였으나(수탁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재계약방식은 운영비 전액을 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금
전액을 도세외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임.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탁금의 4% 지급)

□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비교

-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방식별 도비 부담을 산정
하면 다음과 같음.

< 2022년 계약 방식별 도비 부담 비교 >³⁾

(단위 : 천원)

3)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비로 총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함.

구 분		기존 방식 (실제)	변경 방식 (가정)	비교 (가정-실제)
운영비(a+b)		2,100,000	2,100,000	-
운영수입 지출	계	1,230,778	1,230,778	-
	운영비 전출(b)	820,000	-	△820,000
	도 세외수입(B)	205,389	1,230,778	1,025,389
	수탁기관 수입	205,389	-	△205,389
도비 지출	계(A)	1,280,000	2,184,000	904,000
	위탁금(a)	1,280,000	2,100,000	820,000
	대행수수료		84,000	84,000
도비 부담(C=A-B)		1,074,611	953,222	△121,389

< 2023년 계약 방식별 도비 부담 비교 >4)

(단위 : 천원)

4)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비로 총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함.

구 분		기존 방식 (실제)	변경 방식 (가정)	비교 (가정-실제)
운영비(a+b)		2,185,456	2,185,456	-
운영수입 지출	계	1,298,616	1,298,616	-
	운영비 전출(b)	1,285,456	-	△1,285,456
	도 세외수입(B)	6,580	1,298,616	1,292,036
	수탁기관 수입	6,580	-	6,580
도비 지출	계(A)	900,000	2,272,874	1,372,874
	위탁금(a)	900,000	2,185,456	1,285,456
	대행수수료		87,418	87,418
도비 부담(C=A-B)		893,420	974,258	증80,838

○ 재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을 적용하면 운영비의 60.9%를 위탁금으로 지급한 2022년의 경우 기존 계약 방식에 비해 도비 부담이 1억 2,138만원 감소함. 반면, 운영비의 41.1%를 위탁금으로 지급한 2023년의 경우 기존 계약 방식에 비해 도비 부담이 8,083만원 증가하였음.

재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은 기존 계약 방식을 따를 경우 운영비의 50%을 위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계약 방식으로 휴양림 운영비의 50%를 지급하고, 초과수입을 세입한 경우 2022년 도비 부담은 959,611천원, 2023년 도비 부담은 989,784천원임.(변경 계약

방식의 경우 2022년 도비부담은 953,222천원, 2023년 도비부담은 974,258천원임)

라. 종합의견

- 부가세를 제외한 2025년과 2026년의 휴양림 운영비는 연간 2,300백만원 내외이며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90백만원 정도로, 이는 도가 위탁금을 운영비의 50%를 지급한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계약 방식의 경우 위탁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도비 부담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금이 과도하게 줄어들 경우 수탁기관이 휴양림 운영을 방기할 우려도 있음.
- 휴양림 운영수입이 2021년 9억 4,691만원, 2022년 12억 3,077만원, 2023년 12억 9,865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4% 이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 재계약 시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휴양림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해 보임.
- 한편, 산림자원개발원 등 집행기관은 수탁기관이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해 휴양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